



사이타마현의 마스코트 코바톤

- 1 국민연금
- 2 후생연금보험

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, 국민연금, 후생연금보험의 2 종류가 있으며, 고령이나 장애, 사망 등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, 일본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연금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, 그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따라 가입하는 연금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공통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65 세 이상이 된 후로부터 사망 시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이외에, 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되며, 만일 일가의 생계를 지탱하는 자가 사망했을 때에 남은 가족은 유가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후생연금보험은 일정 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가입하는 제도로 국민연금과 같이 노령연금, 장애연금, 유족연금이 있습니다.

### 1 국민연금

국적을 불문하고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20 세 이상 60 세 미만의 사람이 가입 대상입니다. 가입수속은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담당창구에서 받고 있습니다(사이타마시는 구청) 후생연금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은, 국민연금 가입수속은 필요 없습니다.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일정기간 지불한 사람에게 연금이 지급되며 피보험자 또는 그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. (자세한 내용은 (2)급부를 참조)

#### (1) 보험료

보험료는 가입자 전원이 같은 금액입니다. 일본연금기구에서 보험료 납부서를 보내므로,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금액을 납입합니다.

수입이 적은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.

## (2) 급부

① 다음의 각 기초연금이 일정의 요건 하에 지급됩니다.

- 노령기초연금

자격기간(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등)이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인 경우,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.

- 장애기초연금

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 의해 장애 상태가 된 경우로,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낸 기간이나 면제기간을 포함하여, 가입기간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이 장애인정일(20세가 됐을 때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한 날)에 정해진 장애에 해당될 때 지급됩니다.

- 유족기초연금

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의 자격기간을 채운 사람(단, 보험료 납부완료 기간, 보험료 면제기간 및 합산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)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수입으로 생활하던 자녀를 둔 배우자(2014년 4월 1일 개정) 또는 자녀에게 지급됩니다. (이 경우의 자녀는 18세 도달 연도의 말일까지, 또는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20세까지. 단, 혼인 중인 경우를 제외)

② 기타 급부

- 미망인연금

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나 면제기간을 포함해 10년 이상인 남편이, 노령기초연금 내지 장애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, 10년 이상 혼인 관계가 계속되어 그 사람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아내에게 60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.

※미망인 연금과 사망 일시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,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.

- 사망 일시금

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사람이, 노령기초연금 내지 장애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, 생계를 동일하게 해온 유가족※에게 지급됩니다.(사망일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)

※사망 일시금을 받지 못 하는 유족(사망한 분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손자, 조부모, 형제자매의 순)

## (3) 탈퇴일시금

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본을 출국하여 일본에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

이내에 청구를 하면 납부기간에 상당하는 탈퇴일시금을 지급받습니다.

- 일본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
- 국민연금의 제 1 호 피보험자로서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6 개월 이상 있는 사람
- 일본에 주소지가 없는 사람
-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
- 연금 (장애수당금을 포함)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적이 없는 사람  
※ 일본과 연금통산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상대국의 연금가입기간이 있는 분은, 일정요건 하에 연금가입기간을 통산하여, 일본 및 협정상대국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
탈퇴일시금을 받으려면 다음의 수속을 해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.

- 출국 전에 연금사무소 또는 시청(사이타마시는 구청)/관청사무소에서 「탈퇴일시금 재정청구서」를 받습니다.
- 원칙적으로 출국 후 「탈퇴일시금 재정청구서」에 기입해, 필요서류와 함께 하기의 일본연금기구 본부에 보냅니다.

<보내실 곳>

일본연금기구 본부 〒168-8505 도쿄도 스기나미구 다카이도니시 3-5-24

---

## 2 후생연금보험

사회보험의 적용사업소에서 정해진 시간 및 일수 이상 근무하는 70 세 미만의 사람은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.

또한, 연금을 받으면서 적용사업소에서 근무하는 60 세 이상인 사람은 보수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경우가 있습니다.

### (1) 보험료

보험료는 급료(수당 등을 포함한 총지급액)를 기본으로 결정된 표준보수 월액, 상여를 기준으로 결정된 표준상여액 각각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사업주와 피보험자의 쌍방이 절반씩 지불합니다. 사업주는 피보험자의 급료, 상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.

### (2) 보험급부

- 노령후생연금

노령기초연금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후생연금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, 65 세부터 노령기초연금을 더해서 지급됩니다. (후생연금 가입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에는, 생년월일에 따라 65 세가 되기 전부터 지급됩니다)

## 사이타마현 생활가이드

- 장애후생연금

후생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이 있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의 상태가 되었을 경우,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됩니다. 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, 장애기초연금과 함께 지급됩니다)

- 유가족후생연금

후생연금 가입자 또는 노령연금의 자격기간을 채운 사람(단, 보험료납부완료 기간·보험료 면제기간 및 합산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 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) 등이 사망한 경우, 그 사람의 수입으로 생활해 온 다음과 같은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. (하기 1 에 해당되는 경우는 유가족기초연금도 지급됩니다.)

- 1 자녀 ※를 둔 배우자(남편의 경우 사망당시 55 세 이상, 지금개시 60 세부터), 또는 자녀※
- 2 자녀가 없는 배우자(남편의 경우 사망당시 55 세 이상, 지금개시 60 세부터)
- 3 손자※
- 4 부모, 조부모 (사망당시 55 세이상, 지급 개시는 60 세부터)

※ 자녀 및 손자는 18 세 도달 연도의 말일까지,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20 세까지가 대상. 단, 혼인 중인 경우를 제외.

### (3) 탈퇴일시금

조건이나 수속은 국민연금의 경우와 동일하나, 후생연금의 탈퇴일시금에는 20.42%의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.

귀국 전에 「소득세 및 소비세 납세관리인의 신고서」를 세무서에 제출해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고, 환부신고 수속을 하는 것으로 징수된 소득세를 환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일본 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는 상세한 연금의 설명이나 안내를 일본어 외 14 언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.

URL:<https://www.nenkin.go.jp/international/index.html>



### 상담창구·문의처

<상담창구접수시간>

월요일 8:30~19:00 ※공휴일의 경우, 주의 첫 개소일

화~금요일 8:30~17:15

제 2 토요일 9:30~16:00

사이타마현 생활가이드

| 명 칭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|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우라와 연금사무소            | 048-831-1638 | 사이타마시 우라와구 기타우라와 5-5-1           |
| 우라와 연금사무소<br>가와구치 분실 | 048-227-2362 | 가와구치시 혼마치 4-1-8 가와구치센터 빌딩13층     |
| 오미야 연금사무소            | 048-652-3399 | 사이타마시 기타구 미야하라초 4-19-9           |
| 구마가야 연금사무소           | 048-522-5012 | 구마가야시 사쿠라기초 1-93                 |
| 구마가야 연금사무소<br>카조분실   | 0480-62-8061 | 카조시 미즈마타 2-1-1 카조시청 2층           |
| 가와고에 연금사무소           | 049-242-2657 | 가와고에시 와키타혼마치 8-1 U-PLACE 5층      |
| 도쿄로자와 연금사무소          | 04-2998-0170 | 도쿄로자와시 가미야스마즈 1152-1             |
| 카스카베 연금사무소           | 048-737-7112 | 카스카베시 주오 1-52-1 카스카베 센트럴빌딩 4층,6층 |
| 고시가야 연금사무소           | 048-960-1190 | 고시가야시 야요이초 16-1 고시가야 트윈시티 B시티 3층 |
| 치치부 연금사무소            | 0494-27-6560 | 치치부시 우에노마치 13-28                 |

※분실에서는 주 초의 개소연장상담 및 제 2 토요일의 개소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.

연금상담, 수속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약하십시오.

☎ 예약신청 전용전화 0570-05-4890 월~금(평일) 8:30~17:15